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한위수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 서론

현대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흥미위주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언론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의 사법관련보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서 현재의 실태를 보면 피의자는 재판도 열리기 이전에 언론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단죄되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문화되고 그 인격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민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도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해하고, 나아가 재판결과에 대하여도 근거 없이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 나아가 사법제도 그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피의자(또는 피고인), 원·피고 등 관련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한 언론기관 자체의 경제적 손실 나아가 그 언론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론의 사법관련보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보도, 민사사건보도, 그리고 언론의 재판비판 순으로 현 상황과 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사건관련보도의 문제점은 흥미위주의 주간지, 월간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러한 경향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형사사건보도와 그 문제점

1. 형사사건보도의 실태

(1) 우리나라 언론에 있어서의 형사사건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중인 상태에서부터 그가 진범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른바 언론재판(paper trial)에 의하여 변명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유죄로 단정되어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혐의사실 이외의 주변사실까지 추측·과장보도가 되고 있거나, 나아가 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그의 친척 또는 친구, 심지어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보도는 피의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피고인의 명예권,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 기타 피의자·피고인과 관련된 제 3자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2) 실례로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약상 부부 피살사건에 있어서의 보도를 본다. 우리나라 유수의 신문인 D일보 1994. 5. 27.자 1 면에는 『한약업사 부부 살해범은 장남』, 『백억재산 노린 「패륜범행」』 이란 표제아래 「대한한약협회 서울시지부장 박 00 씨 부부 피살사건은 박씨의 큰 아들 한상 씨(23)가 저지른 패륜적 범행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 19일 0시 10분경부모가 잠든 것을 확인, 옷을 모두 벗은 뒤 준비해 둔 칼을 들고 들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박씨가 구속수감되는 사진을 함께 실고 있고(다른 신문의 기사도 이와는 별차이가 없다), 같은 날짜 31 면에는 『어떻게 이런 패륜이……』 라는 표제하에 「완전범죄를 꿈꾸었던 패륜아는 시시각각 좁혀오는 경찰의 수사망에 결국 범행 1주일 만에 무릎을 꿇었다……」 는 기사와 『범인의 방탕한 미유학생할』 이란 소제목 아래 박씨의 생활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고 있으며, 30 면에서는 『도피성유학이 「방탕」 부른다』 라는 표제의 박스기사는 「친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씨(23)의 패륜적 범행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보도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 17 조 제 4 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고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설사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과정 서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허위로 자백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진범임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므로(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무죄로 확정된 사건은 수없이 많다.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 고숙종 씨 사건, 박상은 양 피살사건이 있고 최근의 예로서는 언론에서 대표적인 오판사례의 하나로 들고 있는 김기웅 순경 사건이 있다. 최근 박한상 씨의 자백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한 기자의 글 1)이 있어 흥미로운 바, 박한상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것이 기우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형사사건보도와 피의자 · 피고인의 인격

(1) 언론보도와 피의자 · 피고인의 명예

피의자·피고인이 그 범죄와 무관한 데도 그를 범인시하는 보도를 한 경우 이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범죄보도에 관한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로서는 그 기사가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면책이 된다.2) 그리고 범죄보도의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가) ① 조T사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함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3) ② 비록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는 없더라도 취재기자가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한 뒤 기사화한 경우에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4)

(나) ① 수사당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수사당국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나,5) ② 관계자나 소문의 유포에 따라 독자적으로 취재 보도하면서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6) ③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 7)는 모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 보도한 혐의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사로 말미암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언론으로서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한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진실로 증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죄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그들을 미리 범인으로 단정하고 「악인」, 또는 「패륜아」로 단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의자 ·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및 초상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그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통상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설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생활상의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생활상의 사실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가 면책이 된다고 할 것인 바,8) 따라서 이성관계, 건강관계, 전과, 재산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수 없고(예컨대 우발적인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기죄전과,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나 여자관계는 순수한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이를 기사와 함께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다. 원래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보도와 관련한 경우에는 ① 그 사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② 공표가 위 사실과 일체가 되어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③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수단방법 이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만 면책이 된다고 할 것이다.9) 따라서 얼굴사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 없는 사진(예컨대 졸업식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관광지에서 친구들과 찍은 기념사진) 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법정으로 가는 모습의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평성 5(1993). 11.24. 판결 10)은 「구금중인 형사피고인에 관하여는 일견하여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하에서 그 모습을 공중의 면전에 나서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굴욕감, 수치심 등의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므로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3) 형사사진보도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사건보도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범인시하는 보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배심제를 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지극히 심각하여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gag order)을 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한 명령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1)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12)도 있다). 배심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직업법관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비교적 적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법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수많은 범죄사건을 재판한 경험도 있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곧바로 진실인 것으로 믿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판사가 언론보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피고인의 우려까지 완전히 씻을 수 있을 것인가? 13)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사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소상-본주의를 채택하여 판사는 제 1 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만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의 공판전에 피고인을 범인시한 언론보도는 판사에게 예단을 주리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14)(실제로 형사사건심판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보도내용이 특히 단순한 범행보도가 아니라 패륜이라고 칭하는 등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획기사까지 실린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의 그 보도가 유, 무죄는 물론 양형에 관하여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주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재판에 쉽게 승복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태도의 보도는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형사사건보도와 피해자 또는 제 3 자의 인

형사사건보도를 함에 있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기타 증인 등 제 3 자의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도 보호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유형의 형사사건에 있어 보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범죄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인범죄 등의 보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보도가 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사생활관계가 불필요하게 보도됨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모여대 이진분 교수피살사건의 보도에 있어 언론은 경쟁이나 하듯 사생활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상황, 남편과의 관계, 피의자와의 친분관계 등을 상세히 보도한 것처럼 15) 언론이 불필요한 사생활의 보도로 인하여 그 유족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이 없지 않다. 또한 박철언 의원 사건에 있어 주요한 검찰측 참고인이었던 홍모 여인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생활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실이 있는 바(예컨대 H 일보 1993. 5. 18. 자 31 면에는 박스기사로서 『박철언 의원에 돈 전달 홍 00 여인 누구인가』라는 표제아래 홍모 여인의 출신학교, 경력, 교분관계, 재산관계, 남자관계 및 가족관계와 거주아파트를 자세히 밝히고 홍모 여인의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다), 가사 그녀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관련되었다 하여도 과연 그 기사내용과 같은 그녀의 사생활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4.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행 형사사건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관 자체가 부당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투철한 인권의식과 함께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기사작성에 있어, ① 익명보도의 원칙, ② 단정적 표현의 지양 및 전문의 명시, ③ 감정표현의 배제, ④ 반론의 게재, ⑤ 「특종신앙」으로부터의 탈피 등이 요망된다. 16)

(1) 익명보도의 원칙

피의자로 보도가 되면 범인시되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체포되더라도 실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으로하는 것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에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명보도를 다른 범죄에까지 확대하여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 그 사람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기사나 사진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치가 등 공인으로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실명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익명보도원칙은 미국, 17) 스웨덴 18)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1980년대부터 본격논의가 되어 이미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있다 19)(예컨대 일본 요미우리신문 1994. 3.25. 자 1면에는 『「구리코·森永」에 유력용의자」란 제목하에 「구리코·森永사건」의 용의자로 오사카북구지구에 거주하는 중년남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물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사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따라서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등의 책임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20)이므로 익명기사라 하여 멋대로 추측 기사를 써서는 안될 것이고 언론사로서는 오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익명으로 표시된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보다 침해의 정도가 훨씬 가벼울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감수하거나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고려가 될 것이다.

(2) 단정적 표현의 지양 및 전문의 명시

형사사건의 보도에 의하여 피의자가 진범으로 단죄되는 것은 대부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기인한다(예컨대 앞에서 본 한약업사 부부 피살사건의 기사 중에는 「박씨는 지난 19일 0시 10분경 부모가 잠든 것을 확인, 옷을 모두 벗은 뒤 준비 해둔 칼을 들고 들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질러 살해했다」는 표현이 있다). 흔히 범죄보도에 있어 「범인은 00였다」 또는 「범인 000을 체포」라고 하는 등 「범인」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범인」이란 표현은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기사에 있어 가장 피하여야 할 표현이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용의자」 또는 「피의자」(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라는 용어만이 사용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는 자를 용의자, 범죄혐의가 짙어져 사건부에 기재가 된 이후에는 피의자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고 한다)란 표현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은 ○○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도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삼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기사 중에 기자가 직접 견문한 것과 제 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형태로 기사를 써야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진범으로 오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 △△을 칼로 질러 살해하였다」는 식의 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사본문에서는 용의자 또는 피의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그가 범인인 것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면서도 제목은 「범인은○○ 식으로 붙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사와 따로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21)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으나, 비록 표제는 그 성격이나 지면관계상 과장이나 단정적 표현이 불가피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표제만 읽고 본문은 읽지 아니하는 독자가 적지 아니하므로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표제에 있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3) 감정표현의 배제

언론은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죄인시하여 「패륜아」,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 또는 「악덕○○업자」 등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사법서사가 사기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악덕사법서사를 체포』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피고신문사의 주관적 판단을 게재하여 그 사법서사가 진실로 피의사실을 감행하였으니 악덕사법서사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일본의 판례 22)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악인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러한 범죄의 발생원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 예방방법 등에 대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논평하는 보도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4) 반론의 게재

형사사건기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쪽의 발표나 주장만을 게재하고 피의자측의 주장은 아예 실리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예컨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했다」는 짧은 문장만을 사족처럼 덧붙이는 따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피의자에의 접근이 봉쇄되고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재가 불명하여 피의자를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지만 적어도 피의자의 취재를 시도하고 그것이 안되면 가족등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측의 견해도 상당한 비중으로 취급하여 피의사실과 함께 보도를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법리에 충실한 보도태도가 될 것이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범죄혐의 기사가 나간 이후의 구제방법이므로 언론기관이 스스로 피의자측의 주장을 기사에 반영해 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5) 「특종신앙」으로부터의 탈피

오늘날 언론사 사이의 경쟁에 의하여 형사사건보도에 있어서도 타언론사에 앞서서 피의사실을 보도하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타언론사에 보도되지 아니한 부분을 보도하려는 이른바 「특종신앙」, 「속보신앙」이 기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언론사보다 빠르게 보도하려고 하다 보면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고 사실확인도 할 여유가 없게 되어 무리한 속보는 결국 오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만다. 따라서 「99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 명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대원칙에 상응하는, 즉 「9 개의 특종을 놓치더라도 1 개의 오보를 막는다」는 인권의식에 투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III. 민사사건보도의 문제점

오늘날 일간신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등 민사사건에 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법률지식의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경우(23)나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사건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과정에서 보도된 일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거나 상급심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에 의하여 판결이 번복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어 언론사로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명한 성희롱사건사건의 제 1 심 판결에 대한 보도를 보면, 1994. 4. 19. 자 D 일보 사회면의 기사는 판결 결과보도와 함께 「우씨는 지도교수인 신 교수의 조교로 있던 지난 199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데이트요구 등 성희롱을 당하다 이를 거부, 재임용에 탈락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씨는…… 이를 거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은 사인간의 개인적인 재산 또는 가족관계상의 분쟁으로 대부분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관계 그 자체는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도함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많다(가사소송법 제 10 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는 법률판단이 중요하고(예컨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어떠 어떠한 사정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여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익명보도원칙을 특히 철저히 지켜나아가야 할 것이며, 판결보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판단인 점을 명시하는 전문형식의 기사(예컨대 「재판부는 '원고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는 「판결문에 의하면 ……는 것이다」는 형식)를 써야 할 것이다.

IV. 부당한 재판비판의 문제점

요사이 재판과정이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가 적지 아니한 바, 법원도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법관의 행위인 재판도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고 또 이를 통하여 법문화의 발전이 기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산적인 비판이 되려면 재판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위에 선 법리적, 논리적인 비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하급심의 명백한 실수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을 비판하는 기사, 대법원에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기사 등은 결코 탓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법원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비판기사도 없지 아니하다. 예컨대 H신문 1993. 7. 4. 자에는 문제된 「정치판결」 대표사례로서 이른바 「안기부원 흑색선전사건」을 들면서 당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사실확인만 마친 채 단 25분만에 심리를 서둘러 마친 점등을 지적하면서 「14대 총선 때의 최대 부정사건인 이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에 대한 재판은 안기부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사법부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전형적인 재판으로 꼽힌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재판 자체가 3~4분 안에 신속히 종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를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주장을 하는 통상의 시국사건과 비교하여 그 재판이 「서둘러」 종결되었다거나 졸속재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한 변호사의 비판(24)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또한 법률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취한 것에 대하여 마치 외부의 압력이나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이른바 「봐주기 판결」을 하였다는 등의 의혹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비판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우려를 안고 있다. 25) 즉 일반국민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판결이유 논리적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언론의 부당한 재판비판 기사를 그대로 믿고 재판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되어 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 힘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권력이나 언론을 통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부와 친분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사법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한 몰각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근대적 사법의 본질을 오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영미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재판보도에 대하여는 법정모욕(contempt of court)으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거나, 26) 우리나라는 영미와 법제를 달리하여 법정모욕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부당한 재판비판기사가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에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재판에 대한 비판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논리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비방 또는 특정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압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V. 결론

다음은 1984년 일본의 한 기자가 당시의 일본언론의 범죄보도에 대하여 쓴 글이다. F(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마스크는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다. 체포시점에서의 (펜을 쥔 경찰관)은 피의자가 기소되면 <펜을 쥔 검사>가 된다. 이따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말도 실을 때가 있지만 스페이스가 적어 공평한 취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판결이 있으면 이번에는 <펜을 쥔 판사>가 된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때까지 연장되지만 무죄(항소개시결정을 포함한다)로 되면 완전히 바뀐다. 경찰·검찰에의 격렬한 비판이 시작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펜을 쥔 변호인단장> 또는 <펜을 쥔 구원회대표>로 변신한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범죄보도>의 실태이다. 범죄보도에서의 <펜을 쥔 저널리스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27)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관련보도의 현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형사사건의 보도에 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범인시하는 현행 보도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태도와 함께 일선사인에 대하여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범인」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지양하며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적인 매도를 삼가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사 또는 가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 관한 법률판단인 만큼 사실관계의 보도에 있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판에 대한 부당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에 대한 비판이나 논평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함으로써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사법부로 하여금 이른바 「국민의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 하도록 하는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이수형, "박한상은 진범인가", 시민과 변호사 1994년 7월호, 65면.
- 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판결(법원공보 1988년 1392면).
- 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 가합 3739 판결(언론중재 1988년 가을호 187면) 참조 (전과 허위보도 사건).
- 4)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 선고 91 고단 4995 판설(언론중재 1994년 여름호, 160면). (한겨레신문 「이내창씨 사망전 안기부요원 동행 기사 사건」).
- 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7. 선고 90 가합 35265 판결(하급심판결집 1990년 제2권 108면). (모 재야인사 임수경 양 밀입북사건 관련설 기사).
- 6)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1 나 27320 판결 (언론중재 1991년 겨울호 167면).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에 당시 청와대 경호관계자 연루설 기사).

- 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8. 선고 91 가합 78412 판결(언론중재 1992년 겨울호 160면). (배우 최유리 씨 유학알선업체 사기관련설 기사).
- 8) 즐고,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 24집(법원행정 처, 1993), 455~457면 참조.
- 9)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 소화 62(1988). 2. 28. 판결(판례시보 1242호 76면): 동경지방법재판소 평성 1(1989). 6.23. 판결(판례시보 319호 76면) 동경고등재판소 평성 5(1993). 11. 24. 판결(판례시보 1491호 99면) 등 참조.
- 10) 판례시보 1491호 99면.
- 11) 이에 관하여는 Don R. Pember, 「Mass Media Law」, Dubuque, Iowa: Wm. C. Brown Publishers, 1987, p.363ff 참조.
- 12) Sheppard v Maxweil, 384 U. S. 333(1966).
- 13) 언론전문가도 신문보도가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다. 평원순,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언론중재 1935년 봄호, 13면 참조.
- 14) 일본에서도 직업법관이라도 범죄보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판사가 마스크의 범죄보도를 통하여 수사정보를 충분히 알고 재판에 임한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견해가 있다(平川宗信,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범죄보도를 중심으로-", 자유와 정의 39권 9호 (1988), 44면)
- 15) 조간 C 일보 1993. 10. 5. 자 31면 등 국내 각 일간지의 1993. 10. 5.자 및 10. 6.자 각 사회면 참조.
- 16) 그밖에 정보원의 명시, 기사에 기자의 서명을 하게하는 것, 속보중시의 보도, 사이드 기사의 억제 등의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山口正己, "뉴스가치판단기준의 검증", 법학세미나-증간 총합특집시리즈 45 범죄보도의 현재(일본평론사, 1990), 113~115면 참조.
- 17) 梓澤和幸, "아메리카의 경찰취재 · 범죄보도사정", 법학세미나증간 총합특집시리즈 45 범죄보도의 현재(일본평론사, 1990), 304면 참조.
- 18) 淺野健一, 「범죄보도의 범죄」 (동경. 학릉서방), 201면 이하 참조.
- 19) 좌담회, "최신의 명예 · 프라이버시 -문제를 분석한 - 보도의 현상으로부터", 쥬리스토 1038호(1994), 17면 참조
- 2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36622 판결(법원공보 1994년 1643면) 등 참조.
- 21) 이에 관하여는 즐고, 앞(주 8)의 글, 417~418면 및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New York: Clark Board Co., 1990), sec. 4. 07(1), at 4~22-4~25 등 참조.
- 22) 샌다이코고등재판소 소화 47(1972). 3. 37 판결, 판례시보 678호 50면.
- 23) 예컨대, 1994. 6. 22. 자 H신문 『법원직원, 법원상대집단소송』 제하의 기사, 1994. 2. 7. 자 H신문 『1천억대 가양동 땅 소송 주목』 제하의 기사, 1993. 11. 24. 자 H일보 『「100억대 땅」 성남시 패소』 제하의 기사 등.
- 24) 박형상, "언론으로부터의 자유와 법적 대응",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도서 출판 한나래, 1993), 208~209면.
- 25) 伊藤正己, 현대사회와 언론의 자유(동경. 유신당, 1974). 238~241면; 신 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언론중재 1985년 봄호, 29면.

26) 영국의 예에 대하여는 C. J. Mir, Contempt of Court,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366ff: 미국의 예에 대하여는 Don C. Pember, op. cit. p.347 참조.

27) 淺野健一, 「범죄보도의 범죄」 (동경: 학양서방, 1986), 서문 참조.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대학과, 미국 펜실레이니아대학 법학과(LL.M)
-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판사, 부산고법 판사
- 저술 「명예와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중립보도면책특권」 외
-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겸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